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Approval of Korean Law School Library

홍 명 자(Myung-Ja Hong)\*

### < 목 차 >

- |                            |                          |
|----------------------------|--------------------------|
| I. 서 언                     | III.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 |
| 1. 연구목적                    | 1. 기준의 의의와 중요성           |
|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2. 기준의 내용                |
| II.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도서관       | IV. 제 언                  |
| 1. 법학전문대학원의 의의와 역할         |                          |
| 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의의와 역할 |                          |

### 초 록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에 목적을 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즈음하여, 법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규정한 법학전문도서관이 실제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을 구체적 인가기준내용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주제어: 법학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법률도서관, 로스쿨도서관, 로스쿨인가기 준, 법률장서, 주제전문사서, 법률전문사서, 법률도서관장, 법률도서관봉사, 자치제

### ABSTRACT

Faced with the establishment of Korean Law School which aims to educate the qualified lawyer to provide the high quality of legal service professionally and efficiently to the people with complicated legal problems, this study analysed the basic approval standards for Korean Law School Library which is described in the bill as a integral part of law school for effective legal education.

Key Words: Law School Library, Law Library, Special Library, Standards, Law Collection, Subject Specialist, Law Librarian, Autonomy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mihong@cu.ac.kr)

• 접수일: 2006년 5월 31일 • 최초심사일: 2006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6월 22일

## I. 서 언

### 1. 연구목적

우리나라 법과대학에게 있어서 2006년은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며, 그 중 상당한 수의 법과대학에게 있어서 올 한 해는 매우 분주하며 긴장된 한 해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법률계의 숙원사업으로 논의되어 오던 미국식 로스쿨제도 도입의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동태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법률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따라서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고, 특히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된다. 이에 따라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충분한 수의 법조인과 자질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관하여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과대학들은 "정원"에 대해서만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을 뿐 법학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법학교육기관이 예비법조인의 양성기관으로서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 특히 도서관환경의 열악성에 대해 법률계에서 공감되고 있지만, 도서관이 법학교육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얼마나 미비하며 이 미비성이 법학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델인 미국의 로스쿨은 설립 초기부터 법학교육을 위한 실험실로서의 법률도서관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법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시되어온 학문이지만, 법률을 교육하고 연구하기 위한 기본 시설인 도서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법률도서관에 대한 인식조차 충분하지 못하여 제대로 태동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인가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 요구되는 법률도서관의 건물을 급작스럽게 신축하는 대학이 나오고 있지만, 도서관이 법학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실을 갖추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학교육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행정책임자인 학장, 교수진, 그리고 도서관장이 "삼발이(tripod)"적 관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세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기울면 넘어지게 되므로 법학교육기관이 발전하고 법학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법률사서의 동반자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유능한 학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교수진이 있더라도 사서의 뒷받침이 없고 또한 도서관의 환경이 장서, 시설 등의 면에서 열악하다면 법학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법학교육의 문제성이 널리 인식되고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법학교육제도 즉 미국식 로스쿨에 기반을 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있는 차제에, 법학교육을 위한 “실험실”로 지칭되는 법률도서관이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반요소에 대해 규정한 기준에 관하여 보다 깊게 다루고 자 이 논제를 채택하였다.

법과대학 도서관은 법과대학이 그 사명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법과대학의 사명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도서관의 사명을 정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법학교육의 기본이념과 목적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법과대학 도서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밝히고, 이러한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법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와 봉사에 대해 밝혀, 앞으로 마련되어야 할 도서관기준을 정하는데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와 유사한 법제와 유사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법학교육제도를 “법과대학원” 체제로 변경한 일본의 제도를 참작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의 제도에서도 법률도서관에 관한 조항이 너무 미비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설정하는데 별로 도움이 될 수 없다.

원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관련한 주장은 법률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미국식의 로스쿨 제도를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기본으로 삼기 위하여 나오게 되었다. 일본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법학교육의 활성화가 곧 법률도서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직결된다는 점이 초창기부터 인식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법학교육이 내실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미국의 법률전문직 단체인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로 칭함) 에서 나온 로스쿨인가기준<sup>1)</sup>과 미국로스쿨협의회(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이하 AALS로 칭함)의 준칙과 세부규정<sup>2)</sup> 등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제2장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되는 법학전문도서관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먼저 다룬 후, 제3장에서는 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제반요소에 관한 기준에 대해 기술한다. 먼저, 기준의

1) ABA,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 2005-2006.

이하 “ABA기준”이라고 칭한다.

2) AALS, *Bylaws and Executive Committee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requirements of membership*, August 2005.

이하 Bylaw는 “AALS 준칙”, 그리고 Executive Committee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requirements of membership은 “AALS 세부규정”이라고 칭한다.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기준의 내용으로 설치와 운영상의 자율성, 도서관건물 기타 시설, 도서관장과 직원, 법률장서, 도서관의 봉사 등의 순서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기준설정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본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법률도서관 특히 법과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도서관에 관한 일반 이론적인 검토는 주로 외국의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고, 미국 로스쿨의 기준에 대해서는 상술한 기준과 준칙 등에 의거하여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 연구”를 기초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와 특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를 구분하기 위하여, 법학교육기관 일반에 대해서는 “법과대학”으로, 미국의 law school에 대해서는 “로스쿨”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법률도서관에 관한 일반적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도서관”으로, 미국로스쿨에 설치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로스쿨 도서관”으로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II.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도서관

대학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고등교육법 제 28조). 대학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인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분야의 전문직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과 연구는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법률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는 법학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도서관의 도움 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과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법학전문도서관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서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법학전문도서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법률안 제17조)고 규정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적 기준으로 되어 있다.

## 1. 법학전문대학원의 의의와 역할

법과대학이란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법학교육은 법률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법률제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법률학의 기본원리를 터득하게 하고, 아울러 기본적으로 법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법의 기본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주어진 법률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할 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법과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잘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법조인단체인 ABA는 로스쿨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이 그 졸업자들로 하여금 법조인으로 입문하여 효과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법률전문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ABA 기준 301).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당면한 법률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기되는 법률문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필수적 교과과목으로 지정하여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예: “법학연구(legal research)”(동 기준 302), 경우에 따라서는 그 로스쿨이 지향하는 특정한 법 혹은 특별한 전문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ABA 기준해석 301-2)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두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동 법률안에 의하면, 이 제도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로써,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그 기본이념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동 법률안 제2조: 교육이념). 요약하면 건전한 가치관과 직업윤리관 및 법적 분쟁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 법률안 제4조에서는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은 법조인의 양성이며 이를 위하여 법률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또한 법률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은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과 연구에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반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 교육이념과 목적인 훌륭한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는 충분한 교육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법과대학의 환경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교육에 대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러한 교육을 받고 법률전문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법률서비스활동을 할 미래의 법조인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sup>3)</sup>

그런데, 법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 변화하므로, 법학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해야 한다. 오늘 날 법학교육에 나타나는 변화로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과 임상교육의 증대, 학제간 교과과목의 확대, 주제별 잡지 및 모의재판의 강화 등이 예시되고, 법률 실무 계의 변화로서는 신기술의 활용, 전문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등이 열거되고 있다.<sup>4)</sup> 법학교육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보다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충분히 구비한 법과대학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가제도이다.

인가란 법조인으로서 입문하기 위한 관문 즉 현재와 미래에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로스쿨인가기준은 충분한 법학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라는 기본목표를 위하여 사법부, 실무변호사, 교수 등이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ABA의 법학교육 및 법조입문 심의회(Council of ABA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 to the Bar)가 1952년 이래 미국 교육성에 의하여 “로스쿨에 대한 국가적 인가기관”으로 인정되어왔다. 이러한 인가제도는 법학교육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이외에 법학교육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로스쿨이 졸업생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촉진하는 것 역시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sup>5)</sup>

## 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의의와 역할

법과대학에 설치된 법률도서관의 기본적인 사명은 법과대학의 교육이념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에는 법과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원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법학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일반적 사명 이외에, 법과대학이 특별히 역점을 두는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특수한 사명이 있다. 일반적 사명이든 특수한 사명이든 도서관은 법과대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AALS는 교수가 체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이러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로스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서관 지원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결정

3) R. Giblin, "Changes and Challenges: Law School, the New Legal Education and the Law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73, No.3(Summer, 1980), p.694.

4) Martha, J. Dragich, "Organizational Structure in Law Libraries: a Critique and Models for Change," *Law Library Journal*, Vol.81, No.1(Winter,1989), p.71.

5) ABA's Role in the Accreditation Process.

<<http://www.abanet.org/legaled/accreditation/abarole.html>> [cited 2006. 5 15]

하기 위한 요소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AALS 준칙 6-6 c).

#### 가. 법학전문도서관의 의의와 특성

“법률도서관이 없으면 법률제도가 운용될 수가 없다”고 피력되듯이,<sup>6)</sup> 법률분야에 있어서 법률도서관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이 법률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반드시 법률도서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판례법을 기초로 하는 영미법 체계 하에서만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문법을 주축으로 하는 대륙법체계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을 지닌다. 즉 어떤 법계에 속하든 법률자료를 참고하지 않으면 주어진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법률도서관은 필요한 법률정보를 찾고 연구를 수행할 때에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할 시설이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자료들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다양한 자료들을 동시에 이용해야 할 이용자의 연구행태에 맞추어 자료들이 항상 이용자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터일 뿐 아니라 미래의 법조인이 되기 위한 훈련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부여할 자료들을 도서관에서 손쉽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법률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학습을 하고 과제로 부여된 자료를 읽으며, 법조인 입문시험 준비 내지 부과된 법률문제와 가상적 사례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이용할 것이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법과대학에 법률도서관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또한 도서관이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왔다. 즉 19세기 초 하버드 로스쿨이 개교할 때부터 인식되어, 1817년 7월 12일자로 간행된 *Boston Adviser*에서는 로스쿨의 개교를 알림과 함께 학생들에게 “완전한 법률도서관(a complete law library)”을 두겠다고 약속하는 기사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법률도서관이 법학 교육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sup>7)</sup> 그 후 법학교육계의 대표적 학자로서 하버드 로스쿨의 학장을 역임한 랑델은 법학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연구를 도입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충분한 여건을 갖춘 대학에서만 이를 교육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여건 중에서 도서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법률도서관이 “교과과정을 위한 중추” 및 “법학교육을 위한 정보원이며 또한 법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원”이라고 규정하고, 나아가서는 도서관을 “실험실” 및 “교수와 학생들을 위한 작업장”으로 규정한 후 도서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6) Robert G. Desiderio, “The School Library: its Function, Structure, and Management,” *Special Libraries*, Vol.73, No.1(October 1982), p.292.

7) Arthur C. Pulling, “The Harvard Law School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43, No.1(February 1950), p.1.

이러한 정신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 법률전문직단체인 ABA는 로스쿨의 교육적 활동에서 능동적이며 대응적 힘을 지닌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ABA 기준 제601 a), AALS 역시 교수와 학생의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적합한 도서관을 회원대학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AALS 준칙 6-8 a), 나아가서는 법률도서관이 로스쿨의 필수적 요소(integral part)라고 명시하고 있다(AALS 준칙 6-8 b).

법률도서관은 법과대학의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그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법과대학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법과대학의 행정책임자인 학장과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들이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함과 동시에, 도서관장과 함께 법률전문가의 양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sup>9)</sup> 다시 말하면 법률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사서의 활동과 법과대학의 교육적 사명과의 사이에 “의미 있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는 법과대학 구성원들이 도서관 내지 사서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 또한 사서들 역시 도서관의 역할이 법학교육과 어떻게 조화되며, 그들의 업무수행 및 이용자와의 접촉이 교육목표의 달성여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한다.<sup>10)</sup> Bade는, 하버드로스쿨이 가장 대표적 로스쿨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률도서관의 중요성 내지 훌륭한 도서관이 되기 위하여 능력 있는 사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두 명의 학장이 있었기 때문이며, 법률도서관 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은 도서관이 법학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학장과 교수단의 무지라고 주장하였다.<sup>11)</sup> 이와 같이 법과대학의 교수단에서 학장 다음으로 도서관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미국의 로스쿨들 중에서 여러 로스쿨들은 법률도서관장에게 ‘부학장’으로서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ABA는 로스쿨의 교육·학술·연구·봉사 프로그램에 효과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률도서관이 로스쿨의 교수·학생·행정당국과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그리고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BA 기준 제601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 17조 제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법학전문도서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도서관을 필수적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법학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동 시행령안 제9조 제1항은 법학전문도서관 외에 모의법정, 세미나실 및 정보통신시설을 예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학전문도서관만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시설이고 나머지 시설 즉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등은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된 시설이다. 법학전문도서관을 다른 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도서관이 법학교육에서 차

8) “The Harvard Law School,” *Law Quarterly Review*, Vol.3(1887), p.118.

9) Giblin, *ibid.*, p.693.

10) Michael J. Slinger, “Opening a Window of Opportunity: the Library Staff as a Meaningful and Integrated Part of the Law School community”, *Law Library Journal*, Vol.83, No.4(Fall 1991), p.687.

11) E. S. Bade, “Quo Vadimus ?,”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2(1949), pp.50-51.



지하는 중요성 즉 다른 시설이 다만 교육을 지원하는 수단에 불과한 반면 도서관은 교육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자체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법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한 법학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나.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

법률도서관은 법과대학의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법률도서관을 필수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임무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으며(AALS 준칙 6-8 a), 또한 ABA는 도서관이 로스쿨의 교육적 활동을 위해 적극적이며 대응하는 활력소로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BA 기준 제 601조 a).

법률도서관은 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실험실과 같은 기관으로서 교수의 교육과 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또한 교수와 학생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주는 참고도서관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대학의 도서관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직원과 충분한 자료 및 시설 등을 구비하여 법과대학의 구성원에게 봉사할 뿐 아니라 그 외의 법률가나 일반인에게도 봉사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도서관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a. 강의실 교육과 임상교육을 보충하는 역할

법학교육의 지원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는 법과대학 도서관은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 강의실 교육과 임상교육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도서관은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b. 연구에 필요한 정보지원을 하는 역할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하므로, 그들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입수하여 제공해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관심범위가 확대되고 연구영역도 넓어지고 있으며, 학제간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도서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은 교수나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급 학생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그 법과대학에서 출판되는 법학 잡지에의 기고, 모의재판(moot court)에의 참가, 졸업논문의 준비 등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그들 역시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정보지원을 해야 한다.

##### c. 지역 내 법률정보 자료실로서의 역할

법과대학 도서관의 일차적 봉사대상자는 그 도서관이 소속하고 있는 법과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다. 그러나 법과대학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도 법률정보를 얻기 위하여 법과대학 도서관을 찾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봉사해야 할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 그 지역 내의 법률관련 기관 중에 법과대학의 도서관만큼 충분한 자료와 설비를 갖춘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과대학 도서관에 의존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주에서 로스쿨 도서관을 “기본적 법률도서관” 또는 “지역자료실”로 규정하며,<sup>12)</sup> 많은 로스쿨 도서관들이 일반인들의 도서관 이용요구에 대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 III.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

#### 1. 기준의 의의와 필요성

미국에서는, 정의로운 사회와 발전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훌륭한 법조인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양성에 대한 책임이 법과대학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 법률전문직 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내실 있는 법학교육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가장 대표적 단체인 ABA와 AALS가 “기준”, 또는 “준칙”과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로스쿨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로스쿨 인가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ABA는 1878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져 1921년 법학교육을 위한 최초의 기준을 제정했다. ABA는 “로스쿨이란 법률전문직으로 되기 위한 관문(The law schools are gateway to the legal profession.)”이라는 기본정신 아래, 법학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법과대학의 인가를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높은 수준의 법학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준심사위원회(Standards Review Committee)의 지원을 받아 주기적으로 기준과 그 해석을 심사하고 개정해 오고 있다. 그래서 ABA 기준의 부적합성을 주장하는 로스쿨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왔으나, 법원은 “ABA 기준의 준수가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대해 법학교육자 및 규제기관들 사이에 널리 공인되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sup>13)</sup> 인가된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충분한 교육환경 하에서 피교육자들이 법률전문직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법학연구 기술 및 기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14)</sup>

ABA와 AALS 또한 법학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12) Desiderio, *ibid.*, p.293.

13) Judith W. Wegner, “Legal Education in the Future” in *The National Conference on Legal Information Issues*(ed. by T. L. Coggins), Fred B. Rothman & Co., 1996. p.251.

14) ABA,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Role in the Law School Accreditation Process, Introduction*, 1997

인식하여, 로스쿨인가기준 중에 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켜 도서관의 각종 시설 및 장서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1924년 ABA는 인가된 로스쿨들이 적절한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그 이후 법률사서들이 개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1970년에는 획기적으로 도서관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 AALS 역시 1900년 초부터 효율적인 법학교육을 위하여 로스쿨에 도서관을 설립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sup>15)</sup>

오늘 날에도 ABA의 법학교육 및 법조 입문부(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 to the Bar)에 법률도서관장, 법과대학 학장 및 교수로 구성된 법률도서관위원회(Law Libraries Committee)를 설치하여, 법률도서관에 관한 기준과 법률도서관에 관한 연차적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위한 설문 등에 의해 기준을 주기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였다.<sup>16)</sup> AALS 역시 법률도서관부(Law Libraries section)를 두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과 기술에 관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Libraries and Technology)를 두어 로스쿨 도서관의 운영관리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ABA 와 AALS 외에, 미국법률도서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역시 법과대학 도서관 기준의 설정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즉 1906년에 창립된 이후 법률도서관의 역할 내지 법률사서의 임무로서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여 왔던 AALL는 독자적으로 로스쿨 도서관기준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이들 전문직단체와 제휴하여 도서관기준의 설정을 위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Cooperation between AALS and AALL)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도서관기준이란 도서관 봉사 및 프로그램이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 근거로서, 전문직 단체와 인가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이 기준은 최저수준 혹은 이상적 수준을 규정하거나, 전형적 절차 또는 질적·양적 평가를 위한 수준을 정한 것이다.<sup>17)</sup> 법률도서관 기준은 법률분야의 다양한 전문적 요구 특히 교육과 연구에 관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인 직원과 봉사 및 시설 등에 관해 최저의 양적, 질적 수준을 기술한 것으로서, 강제적 혹은 임의적 준수를 위하여 전문직 단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식 문서이다.<sup>18)</sup>

## 2. 기준의 내용

법률도서관학 분야의 대표적 학자 중의 하나인 코헨이 법률도서관의 목표로서, 이용자에 대한

15) Bade, *ibid.*, p.41.

16) *ibid.*

17) ALA, "Standards,"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83, p.215.

18) David Badertscher, "Standards for Law Libraries and Law Library Service," *Bookmark*, No.48(Summer, 1990), pp.282-286.

충분한 봉사, 요구에 적합한 각종자료의 소장 및 소장 자료에 대한 기록의 유지, 법학의 발전에 대한 기여, 그리고 도서관과 직원의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예시하고 있듯이,<sup>19)</sup> 법과대학 도서관은 법학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제반 요소 즉 필요한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충분히 구비한 후, 도서관이 담당하여야 할 봉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ABA 기준은 제 6장을 모두 법률도서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나아가서 기준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때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을 추가 규정하여 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도록 하고 있어서 법률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ABA 기준 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AALS 준칙과 세부규정도 준칙의 6-8, 세부규정 6-8.1에서 6-8.6까지 법률도서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동 시행령안에서는 다만 한개의 조문에서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법률안 제17조 제1항과 동시행령안 제9조 제1항에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이라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동 시행령안 제9조 제2항에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이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장서와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인가심사기준 연구”(이하 “인가심사기준연구”로 칭함)를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인가심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받았다. 이 심사기준에 도서관에 관한 인가심사기준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도서관을 포함하여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을 “교육시설”영역에 포함시켜 배점비율 13.5%, 배점 135점, 평가항목 수 15항목으로 다루고 있다.<sup>20)</sup> 그런데 이 교육시설 영역을 분석한 결과 법학전문도서관 관련 항목이 7개 항목에 달하고 배점이 54.8%를 차지하고 있어서, 법학전문도서관을 기타의 교육시설과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가. 설치와 운영상의 자율성

도서관이 그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려면 합리적인 도서관정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ABA는 법률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학장, 법률도서관장, 교수단의 의견에 의해 결정하고, 법과대학장과 법률도서관장이 로스쿨 교수단과의 협의를 거쳐 도서관정책을 정하도록 명시하였다(ABA 기준 602(b) 및 해석 602-1). AALS 역시 법률도서관은 교수의 참여 하에 도서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AALS 준칙 6-8-1 a), 또한 도서관장과 교수의 참여하에 성문화된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심의하여 개선해야 하며, 이 도서관발전계획에는 좀 더

19) Morris L Cohen, "Tradition and Change in Law Library Goals," *Law Library Journal*, vol.75,(1982), pp.195-197.

20) 김 신복,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인가심사기준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5, pp.188-191.

구체적으로 장서의 적정 증가율, 봉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직원, 적절한 물리적 시설, 자료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등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밝히고 있다(AALS 준칙 6-8-2).

법과대학이 그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려면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법과대학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법률도서관은 법과대학의 법학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므로, 법과대학의 교육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중앙도서관과는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재정을 자체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제로 운영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찍이 1950년대 미국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자치제(Autonomous law library 혹은 autonomy)란 법률도서관이 법과대학의 한 단위로 관리 운영되는 체제로서, 이 체제에서는 법률도서관의 예산과 직원인사 등이 법과대학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치제 하에서라도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도서관 자체의 특성을 살려 법과대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 운영된다. 반면에, 통합제(Integrated law library 혹은 integration)란 법률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한 단위로 운영되는 체제로서, 이 체제에서는 법률도서관의 예산과 직원인사 등이 모두 중앙도서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sup>21)</sup>

ABA는 1959년에 공식적으로 자치제를 인정하였고, AALS 역시 1936년에 법률도서관이 일반 도서관으로부터 행정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이러한 기본입장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속되어 각종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ABA는 법률도서관의 발전을 주도하고 도서관자료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로스쿨이 행정적으로 자치권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며(ABA 기준 602 a). 또한 AALS 역시 높은 수준의 봉사를 위해서 법률도서관이 자치권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AALS 준칙 6-10 b). 이러한 규정은 법률도서관의 자치권이 곧 각종 법학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높은 수준의 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sup>23)</sup>

법률도서관의 자율성은 특히 예산과 인사에 있어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예산 면에서, 법과대학 도서관은 법과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해야 하므로 법과대학 예산에서 배정을 받고 도서관 예산의 집행 등 재정 면에서 법과대학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산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치제는 유명무실화 될 수 있으므로, ABA는 로스쿨의 교육, 연구,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ABA 기준 601의 b), 법률도서관의 예산은 로스쿨 예산의 일부로 배정 받으며 또한 로스쿨 예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ABA 기준 602 d). AALS도 로스쿨 도서관이 예산에 대해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21) J. L. Mullins, *A Selected Factors Affecting Growth Rates in American Law School Libraries, 1932-1976*,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84), p.5.

22) *ibid.*, pp.10-13.

23) Guy Tanguay, "The Case for the Special Status of the University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66 (1973), p.25.

(AALS 세부규정 6-8-1 b).

오늘날 자료비의 증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직원 기용의 필요성, 각종 정보기술 장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서관 공간 확보의 필요성 등에 따라 도서관 예산은 계속 증액이 필요하나,<sup>24)</sup> 법과대학에 의한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사정이 어려운 시대에 자금조달을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도서관의 이용 및 봉사에 대해 유료화하여 도서관으로 하여금 수입원을 확보하도록 많은 압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에 관한 적극적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5)</sup>

또한 인사 면에서 볼 때, 법률도서관의 직원관리권을 중앙도서관에게 준다면 직원의 전문적 능력을 고려함이 없이 순환근무의 방법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직원을 선발할 때 법률도서관에 적합한 직원인가의 여부를 파악하여 선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인사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법률도서관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적합한 직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ABA는 법률도서관장과 학장에게 직원의 선발과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ABA 기준 602 c) 인사 면에서의 자치제 채택을 명시하고 있으며, AALS 역시 인사 등을 포함한 관리적 면에서 높은 수준의 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도서관은 대학교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ALS 세부규정 6-8-1 b).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인가심사기준연구에서는 도서관정책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다. 새롭게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이 그 위치를 확립하려면 그 대학교의 중앙도서관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앙도서관의 관할 하에 둔다면 법학전문도서관 역시 중앙도서관의 일반적 정책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므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특성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본래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운영을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 특히 중앙도서관 입장에서는 모든 주제 분야를 포괄하여 다루어야 하므로, 법률도서관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특별한 취급을 하기도 곤란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을 필수적 시설로 규정하고, 인가심사기준연구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여부에 대해 배점을 인정하지 않고 설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 불합격으로 처리하도록 결론을 내린 것은,<sup>26)</sup> 아무리 훌륭한 중앙도서관을 둔 대학이라도 법학교육지원시설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며, 이는 중앙도서관과 통합하지 않는 자치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학전문도서관의 성립단계에 있으므로, 법률분야의 전문적 봉사기관으로서 제

24) Desiderio, *ibid.*, p.295.

25) Penny A. Hazelton, “Law Libraries as Special Libraries: an Educational Model,” *Library Trends*, Vol.42, No.2(Fall 1993), p.331.

26) 김 신복, 전거서, p.189.

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도서관의 일부(분관형태라도)가 아니라 자율성을 지닌 도서관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중앙도서관의 관리 하에 둔다면 우선 법학전문도서관에게 필요한 장서의 확보가 곤란할 것이다. 중앙도서관이 직접 법률도서관이 소장해야 할 자료를 선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도서관이 직접 소장할 자료를 선택하더라도 중앙도서관이 배정한 예산액의 한도 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법학교육에 필요한 장서를 충분히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도서관의 입장에서는 특정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풍부한 예산을 지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 나. 도서관전물 기타 시설 등

법과대학 도서관은 이용자의 이용목적 및 이용 행태 면에서 일반도서관과는 차이가 있다. 법률 연구의 성질상 도서관은 반드시 이용되어야 하며, 또한 법률장서의 특성 즉 참고장서로서의 성질에 따라 법률자료의 포괄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며 다양한 자료를 동시에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생과 교수 등 동질성을 지닌 이용자집단이 동시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자들이 필요한 작업을 보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 (a) 도서관의 위치와, 공간 및 열람석 확보

법과대학의 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보관하고 이용시키는 시설로서 그 가치가 있기보다는, 법학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실험실로서 활동할 때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래서 ABA는 로스쿨인가절차규정(ABA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 IV, A)에서 로스쿨이 그의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적합한 도서관 및 학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법과대학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법과대학 구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충분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법률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률도서관은 법학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폭넓게 소장하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대한 공간이 필요하다.

ABA는 법률도서관의 물리적 시설이 로스쿨의 프로그램, 교수와 학생 등록자, 법률도서관의 봉사, 장서, 직원, 운영, 및 장비 등과 관련해서 규모와 위치 및 디자인 면에서 충분해야 하며,(ABA 기준 702), 또한 로스쿨의 학생 및 교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좌석을 보유해야 할 뿐 아니라(ABA 기준 해석 702-1), 그들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학습과 연구를 하도록 좌석을 제공하고 집단학습 기타 협동적 작업을 하는데 적합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ABA 기준 703) 규정하고 있다.

AALS 역시, 교과과목을 폭넓게 지원하고 교실 밖의 지적 공동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수와 학생의 연구 관련 요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물리적 공간과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AALS 준칙 6-9).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용자들에 의해 효율적이며 편안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되고 조직 운영되어야 하며 적합한 공간을 보유해야 하고, 또한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ALS 세부규정 6-8-5 a). 나아가서 직원들이 연구·교육·행정 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또한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도서관장과 직원 및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리한 곳에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AALS 세부규정 6-8-5 b).

이와 같이 도서관에는 충분한 좌석이 확보되어야 하며, 법학연구의 특성 즉 법률사안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조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직접 용이하게 다양한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좌석이 골고루 분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동 시행령안에는 법학전문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치, 공간 확보, 열람석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인가 심사기준 연구에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지 못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전용공간의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배점비율 5.9%, 배점 2-8점), 도서관을 포함한 공통시설공간의 확보(학생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면 8점), 그리고 열람석(학생정원의 70% 이상의 열람석을 확보하면 15점)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27)</sup>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학도서관이 학생정원의 20%이상의 열람석을 확보해야 하므로, 법학전문도서관이 법학교육과 법률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b) 물리적 시설과 기술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은 법학의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각종 기술을 활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나타나는 각종 변화 즉 도서관의 자동화, 다양한 매체자료의 출현과 이에 따른 검색방법의 개발, 그리고 컴퓨터의 활용을 통한 법학교육의 개발 등과 같은 현상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도서관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ABA는 로스쿨의 법률도서관이 최신기술을 받아들여 활용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ABA 기준 601 c), 또한 현재 및 미래의 법학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로스쿨이 적합한 물리적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ABA 기준 701). 이 때 적합한 물리적 시설이란 먼저 법과대학의 교육·학술·연구·봉사·행정적 요구의 지원을 위한 최신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ABA 기준해석 704-2).

27) 상계서, pp.188-189.



AALS도 광범한 교과과목과 교실 밖의 지적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수와 학생의 연구관련 요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로스쿨이 반드시 적절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AALS 준칙 6-9), 교실에서의 강의, 교수와 학생의 연구관련 요구, 법학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도록 성문화된 계획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AALS 세부규정 6-9.1).

오늘 날 기술적 발전과 세계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21세기의 법과대학 도서관들은 국내·외의 법률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9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시설의 하나로서 정보통신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도서관이 국내·외의 다양한 법률정보원을 활용하여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봉사를 폭넓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인가심사기준연구에서도 인터넷 접속시스템 설치의 충분성(7점 배점),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정도(7점 배점), 컴퓨터 랩 공간 확보 정도(7점 배점)를 평가 항목으로 하여 비교적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인쇄 자료에만 의존하면 필요로 하는 법률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입수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깨닫고, 보다 다양한 전자정보원을 활용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 다. 도서관장과 직원

도서관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봉사현장에서 실제로 봉사를 하는 사서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도서관 현장에서 법률정보봉사를 수행하는 법률사서직이 일반적인 사서직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크게 인식된 것은 1906년 법률도서관협회를 설립한 때부터이다. 그러나 법률사서에 대한 인식이 일찍이 나타났던 미국에서도 그들의 위치를 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사서 자신이 그들의 존재의의, 기능과 역할 등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서들을 그들과 같은 계층으로 인정하면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한 법학교수들의 엘리트의식에 의해서도 나타났다고 한다.<sup>28)</sup>

법률사서들은 법학 내지 법률전문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법률분야의 변화를 재빨리 인식하여 변화하는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봉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또한 도서관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Kelsh는 법률사서를 배치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values)로서, 교육 및 봉사에 있어서 교수들이 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할 수 있고, 이용자층에게 적합한 다양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담당업무의 실시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최대의 봉사를 하며, 다른 나라의 법률정보에 대해서도 제공하므로 세계화에 적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

28) Slinger, *ibid.*, p.690.

문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미래의 법조인이 사회정의의 구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sup>29)</sup>.

법률도서관에서의 연구는 목표 지향적 즉 법률문제의 해결을 필요로 한다. 즉 법률문제를 지닌 이용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률정보에 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자료는 법학에 관한 기본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관리에 있어서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법률도서관의 이용자도 법률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요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상응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도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지원을 요구받는 법률정보 전문가인 법률사서는 법학연구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훈련을 받음으로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으며, 이들 법률사서의 교육과 경험, 및 연구기술은 법과대학 도서관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sup>30)</sup> 특히 이용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파악한 이용자 내지 이용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률정보를 내포한 정보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그들은 더욱 전문적인 봉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로스쿨 중에서 최초로 전임 사서와 법률도서관장을 둔 대학은 하버드 로스쿨과 예일 로스쿨이었으며, 1880년대의 일이다.<sup>31)</sup> 일찍이 법률전문직단체들은 로스쿨 도서관장의 자질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들은 법학에 관한 훈련, 학자로서의 성향, 교육자로서의 기질, 전문직분야에 대한 기여능력 등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sup>32)</sup> 나아가서 전자형태의 연구용 자료와 교육용 도구가 출현하여 교과과목의 진행에 활용됨에 따라, 학생과 교수에게 기술의 활용에 대해 교육하는 “최전선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sup>33)</sup> 뿐만 아니라 법률사서는 많은 로스쿨에서 공식적으로 개설된 강좌 등을 가르치기도 하므로, 이들에게 교수직위(Faculty Status)를 부여하여 종신 재직권을 인정하고 또한 높은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으며, 교수들과는 업무상 동료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sup>34)</sup>

ABA와 AALS는 그 기준에서 로스쿨 도서관장 및 직원의 자격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먼저, 도서관장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ABA는 로스쿨 도서관의 관리책임자로서 전임 관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관장직 선발과 유지는 로스쿨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로스쿨 학장과

29) Virginia J. Kelsh, "The Law Library Mission Statement," *Law Library Journal*, Vol.97, No.2(2005) pp.323-334

30) Mary A. Hotchkiss, "The Role of Law Librarians in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Profile*, No.2(Winter 1992), pp.8-12.

31) Laura N. Gasaway, "Women as Directors of Academic Law Libraries," in *Law Librarianship: Historical Perspectives*(ed. by L. N. Gasaway), Fred B Rothman & Co., 1996, pp.497-500).

32) *ibid.*, p.504.

33) Desiderio, *ibid.*, p.295.

34) John B. Attanasio, "The Research Librarian in the Educational Mission of the Law School," *Law Library Journal*, Vol.81, No.1(Winter 1989), p.148.

교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는 법학과 도서관·정보학에 관한 이증학위와 행정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에게는 종신재직권을 갖는 로스쿨의 교수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명된 법률도서관장은 예산, 인사, 장서, 봉사, 시설 등 법률도서관의 모든 분야에 관한 관리책임을 부담한다(ABA 기준 603조와 기준해석 603-1, 2, 3). AALS도 도서관장은 법학과 도서관학 두 학문분야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교수단의 구성원으로서 정식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ALS 준칙 6-8.c 및 AALS 세부규정 6-8.6 a).

다음, 법률도서관의 직원에 대해 보면, ABA는 도서관 봉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에는 충분한 수의 유능한 직원을 두어야 하며(ABA 기준 제 604조), 이들은 학장과 도서관장이 협의하여 선발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ABA 기준 제 602조의 c). 도서관 직원의 수는 교수수와 학생 수, 연구 프로그램, 대학원 프로그램, 이증 학위 프로그램, 장서의 규모와 증가량, 봉사의 범위, 직원의 교육담당 정도, 컴퓨터 봉사에 관한 직원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였다(ABA 기준해석 604-1). AALS도 법과대학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전임직원을 두어야 하며, 이들에게는 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ALS 준칙 제 6조의 10, c).

ABA와 AALS의 기준에 따라 로스쿨의 도서관장이 법학과 도서관 정보학에 관한 이증학위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미국의 로스쿨에는 실제로 도서관장 외의 직원들 중에도 이증학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상당 수 있다. 특히 참고사서의 경우에는 이증학위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교수직위를 부여받은 경우도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동 시행령안에는 도서관장과 도서관 직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인가심사기준연구에서는 법학전문사서의 확보 정도에 대한 평가항목을 두어 비교적 높은 배점(10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사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의 관장으로서 미국의 법률도서관장처럼 도서관·정보학 분야와 법률학 분야의 이증학위를 보유한 법률전문사서를 찾기가 어렵고 엄밀한 의미의 법학전문사서를 기용하리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중에서 도서관장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도 문제겠지만 법학전문도서관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재직하고 있는 원로교수로서 법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이 매우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교수가 도서관장이 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장 및 교수단과 함께 도서관정책을 수립할 때 제대로 도서관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후에 미국에서와 같이, 법률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지닌 전문가가 도서관·정보학을 다시 공부하여 법률전문사서로서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배출된다면 그에게 교수직위를 지닌 법학전문도서관장으로 기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률도서관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도서관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학 분야의 도서관봉사를 하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찾는 일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사서들이 법률도서관을 관리할 수 밖에 없겠으나, 현직 사서들이 법률학위를 취득하도록(이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이 아니라 일반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서라도 가능) 하고, 중국에는 학사학위 수준이라도 법률분야와 도서관·정보학 분야의 이중학위를 보유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 라. 법률장서

도서관은 법학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깊이 있는 법학연구를 하기 위한 실험실이며 작업장이므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장서를 보유해야 한다. Tanguay는 법과대학 도서관의 장서가 이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첫째로 학문자체의 특성과 법률문헌의 특성 및 법학교육의 성질, 둘째 법학분야의 출판물의 급증과 이에 대한 법률가들의 관심 고조, 셋째는 법학연구의 동태적·정태적 성질로 인한 최신자료와 소급자료의 필요성, 넷째는 세분화된 전문분야에 관한 자료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밝히고 있다.<sup>35)</sup>

법률도서관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률문제 또는 연구주제로서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法源, sources of law)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소장해야 한다. 법원(法源)이란 법원(法院)이 재판할 때 적용하는 규범으로서, 대륙법계에서는 제정법이 법의 기초를 이루는데 반하여, 영미법에서는 대부분 판례법이 그 기초를 이룬다.<sup>36)</sup> 그러므로 법률도서관은 그 나라의 법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풍부한 법률장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국가가 성문법국가에 속하든 불문법국가에 속하든 법률도서관의 핵심장서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정보원은 정부 3부에 의하여 생산된 일차적 법원(法源)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학연구를 위한 원 자료(raw material)로서, 즉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제정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입법관련자료, 법집행기관인 행정부가 법률 집행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규정이나 결정에 관한 자료, 그리고 법해석기관인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판결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법률학자 기타의 법률전문가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생산한 논문, 저서, 판례평석, 주석서 등도 법률문제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들을 이차자료라고 하며, 이러한 이차자료 역시 법률도서관에 소장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도전으로 작용하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화는 법률도서관의 장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가일로에 있는 수많은 법률정보가 인쇄 자료에만 수록된다면 필요한

35) Tanguay, *ibid.*, p.16.

36) 田中英夫 編, 英美法辭典, 東京大學 出版會, 1991.

정보를 신속 정확하고 편리하게 검색하는데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새로운 매체의 출현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자 자료가 출현하게 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 이후 1차적 법률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정부기관과 여러 벤더들에 의하여 다수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법률정보의 이용자들은 법률 연구를 할 때 원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정보를 입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법과대학을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미래의 중요한 수요자로 보아 법과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에게는 매우 염가로 봉사를 물론 그들의 연구에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많이 활용하도록 컴퓨터 장비와 프린터 등을 도서관에 제공하기도 한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1차적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World Wide Web가 상용으로 또는 각급 정부기관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에는 도서관에 직접 가서 사서의 봉사를 받았었지만, 오늘 날에는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컴퓨터에 접근하여 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교수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존의 도서 및 새로운 도서에 대한 디지털 화를 큰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의 법률정보와 국제기구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외국의 성문법과 불문법, 행정법규, 및 조약 기타 국제협정 등이 법률도서관의 장서로서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법과대학 도서관이 보유하여야 할 최저장서에 관한 기준은 초창기부터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오늘날에도 장서와 관련된 내용이 도서관 인가기준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률도서관은 주로 법률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률자료는 일반자료와는 달리 주어진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에서 다방면으로 관련된 정보를 찾아 이용해야 하므로, 이러한 자료들은 그 일부분만이 이용되지만 그러나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자료들이다.<sup>37)</sup>

ABA는 법률도서관의 장서가 로스쿨의 연구 활동과 교과과목을 지원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ABA 로스쿨의 인가절차규정, IV. B) 그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장서의 발전을 위하여 학장, 교수단, 및 도서관장의 협력 하에 장서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는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ABA 기준 606 c 및 기준해석 606-6).

법학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하여 로스쿨의 법률도서관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장서가 있는데, ABA는 모든 법률도서관이 핵심장서(core collection)를 소장하여 편리하게 장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ABA 기준 606 a). 그리고 핵심장서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다음의 자료를 예시하고 있다(ABA 기준 606-5).

- (1)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집과 각 주의 고등법원의 판결집
- (2) 연방의 모든 법률 및 회기별 법률집, 그리고 각 주의 현행 해제법전 1종

37) Morris L. Cohen, *How to find the Law*, 7th ed., (West Publishing Co., 1976), pp.1-2.

- (3) 미국의 모든 출판된 최신 조약 및 국제협약
- (4) 연방정부의 규정집 및 로스쿨이 소재한 주의 규정집
- (5) 로스쿨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연방 및 주의 행정 결정
- (6) 로스쿨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미국의 의회자료
- (7) 로스쿨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2차 자료
- (8) 판례인용일람(citators), 정기간행물 색인 등의 도구

그리고 핵심장서 이외에도, 교과과목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교육을 촉진하는 장서, 교수의 교육·학술·연구·관심분야 봉사를 지원하는 장서, 로스쿨의 특별한 목적에 도움을 주는 장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ABA 기준 606 b).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확보한 법률장서는 교수와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완전성과 최신성을 지녀야 하고 충분한 양으로 갖추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ABA 기준해석 606-1). 또한 도서관 및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적절하게 혼합하여야 하며(ABA 기준해석 606-2), 어떠한 형태로 되어있든 모든 정보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ABA 기준 606 b). 즉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자 자료를 프린트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청각자료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ABA 기준해석 606-7).

그리고, 핵심 장서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도서관의 자료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과 성문화된 협약을 맺어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BA 기준해석 606-3).

AALS 역시 ABA와 비슷한 내용으로 장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AALS 준칙 6-8 a). 그러나 자료의 제본, 수선, 마이크로필름 화 등 장서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AALS 세부규정 6-8-3) ABA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일차적 법원으로 삼고 있는 대륙법계의 국가이다. 그러나 불문법에 속하는 판례도 법학교육과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정보로 인정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영미법의 제도가 도입되어 채택되는 법 분야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도서관에서도 대륙법제도에 관한 기본 자료만이 아니라 영미법제도에 관한 기본 자료도 구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통상의 증대 등으로 외국과 연결된 법률문제가 많이 발생하며 또한 법률서비스의 개방이 주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의 법제도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국제기구와 관련된 자료 및 각종 조약 등 국제법 영역에 속하는 자료를 폭넓게 구비해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학전문도서관의 장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다만 동 시행령안 제9조 제2항에서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장서와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피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인가심사기준연구에서는 법학 관련도서의 확보정도를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4만권 이상의 장서와 정서보관공간을 확보한 경우 20점을, 3만권 이상 3만5천권 이하 확보한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하여 1만권의 차이가 평가점수 15점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법학도서의 내용과 질에 대해 평가하도록(7점 배점)하고 있다. 양적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배점을 주고 질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 감이 있는데, 양과 질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과대학도서관이 시험준비를 위한 곳으로 사용되어 도서관의 법학도서 중에는 교과서 내지는 수험준비서가 상당량 소장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들 자료는 새로 출범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내지 교육방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핵심장서를 구비하도록 함은 물론 연구용 자료, 최신자료 등의 확보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질적 평가를 좀더 강화함으로써 장서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법률분야의 전자정보원에 의하여 필요한 법률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데이터베이스 등의 확보 내지는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정도에 대해 7점을 배점하고 있고 콘소시움에 의한 접근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마. 도서관의 봉사

Cohen은 로스쿨도서관의 봉사내용으로서, 장서의 보존 및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지원하고, 법률자료의 이용법 내지 법학연구방법에 관하여 이용자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봉사에 관한 홍보와 법학분야의 자료 및 연구방법에 관한 최신 발전상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8)</sup> 이외에,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해답을 제공하거나 법률서지에 관해 배우고자 하는 학생과 교수들을 도와주며, 또한 자료이용법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도 법률도서관이 실제로 담당해야 할 봉사기능이다.<sup>39)</sup>

로스쿨 도서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봉사에 대해서 ABA 기준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도서관은 로스쿨의 교육·연구·봉사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참고봉사, 서지봉사와 기타 필요한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ABA 기준 605), 이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해석에서 도서관 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즉 적절한 참고봉사, 색인과 목록, 검색어 및 검색방법의 개발에 의해 도서관장서나 기타 정보원에 대한 지적 접근을 제공, 상호대차나 기타 방법에 의한 문헌의 제공, 학생의 연구기술과 서지기술의 향상, 도서관 간행물의 제작, 기타 법과대학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봉사의 제공 등이 적절한 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ABA 기준해석 605-1).

38) Cohen(1982), *ibid.*, p.195.

39) Patrick E. Kehoe, *AALL Newsletter*, 1991년 6월.

한편, AALS는 도서관이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일반적 지침을 명시하였고(AALS 준칙 6-8 b), 세부규정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교수와 학생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법률도서관은 시간과 형태에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서관의 기본 장서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타 기관과 공유하고 있는 특수집서, 학제간 연구를 위한 자료, 도서관 외에 비치된 기타 유형의 자료 등에 대해서도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상술하고 있다(AALS 세부규정 6-8.4).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로 이용되는 때에는 항상 적어도 1명의 전문직 사서가 봉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AALS 세부규정 6-8. 6 b).

이와 같이 ABA나 AALS가 정한 기준과 준칙에 따라 미국의 로스쿨들은 매우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sup>40)</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동 시행령안, 그리고 인가심사기준연구 어느 것도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봉사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ABA는, 법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가 법학연구에 필요한 기본도구에 관한 지식과 그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sup>41)</sup> 이러한 기술은 법과대학 재학 중에 주어진 교과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졸업 후에 법률가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로스쿨에서는 실제 법률문제에 봉착했을 때 법률가로서 어떻게 대처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치중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자료를 다루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는 법률문제 뿐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그 해결을 위한 법학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도서관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기술이 매우 필요하다.

법률도서관은 법학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용자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서가 이용자에게 참고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과목의 진행 중에 담당교수가 그 과목에 관련된 자료이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사서에게 요청을 하여 교육할 수도 있으며, 또한 사서 자신이 자료이용에 대하여 특강 형식으로 또는 벤더가 전자자료의 활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알선하고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독립된 교과과목(법률연구, legal research)에서 직접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사서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적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직접 이용자를 상대로 하여 봉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법과대학

40) 홍명자, "효율적 법학교육을 위한 법과대학 도서관의 제도화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 (2006. 6), pp.323-327.

41) ABA, *Statement of Fundamental Lawyering Skills and Professional Values*, 1992, Mary A. Hotchkiss, *ibid.*, p.9에서 재인용.



도서관의 법률사서들은 법학과 도서관·정보학에 관한 지식을 배경으로 법률정보를 찾는 이용자를 도와 그들이 방대하고도 다양한 법률정보원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또한 연구조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나아가서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보원의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sup>42)</sup> 이와 같이 사서는 법률자료와 법학연구방법에 관한 일차적 교육자이며 또한 지속적인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법과대학에서 그리고 법률도서관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해 왔다.<sup>43)</sup>

법과대학은 법조인 양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학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속에 법률자료의 이용에 관한 강좌가 포함되어야 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즉 법조인으로서 당연하게 되리라고 예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ABA는 로스쿨의 교육목적이 졸업 후 법조인으로 진출하여 법률전문직 분야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현재적 및 잠재적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도록 훈련시키는데 있다고 밝히면서(ABA 기준 301 및 기준해석 301-1), 이를 위하여 미국 로스쿨의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교과과목으로서 “법률연구(legal research)”강좌를 명시하고 있다(ABA 기준 제 302 조). AALS 준칙 6-7.e와 세부규정 6-7.9 b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 20조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시행령안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법률정보의 조사”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가심사기준 연구에서는 이 과목을 포함한 필수과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법학 훈련을 받은 사서가 이 과목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sup>44)</sup> 물론 이와 같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교육을 맡은 사서가 법률분야의 동향, 법률관련 자료 및 이에 대한 접근, 그리고 법학교육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과대학 도서관은 상술된 교육적 역할 이외에 연구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는 물론 교수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도서관은 교수의 연구과제, 강의 및 논문등과 관련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의 사서와 교수가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수와의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연구 활동은 교수만이 아니라 학생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미국의 로스쿨들은 교과과목에 의

42) Attanasio, *ibid.*, p.146.

43) Cohen (1982), *ibid.*, p.193.

44) Richard A. Danner, *Law School Libraries*

<<http://www.law.duke.edu/fac/danner/LawSchoolLibraries.html>> [cited 2006. 5. 1]

한 교육 이외에 법학 잡지의 발행과 모의재판(moot court)의 참가 등이 법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봉사가 권장되어 임상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은 그들의 연구에 관련된 지원을 도서관에 요청할 것이다.<sup>45)</sup> 이와 같은 연구지원 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서는 그들이 봉사하는 이용자들에게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이용자별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도서관의 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이상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는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도서관기준이 개개의 법률도서관이 봉사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요한 여건을 명시하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구비하였을 때 인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도서관이 단독으로 봉사하기 보다는 협력에 의하여 봉사를 할 때 보다 이용자의 요구는 더욱 만족스럽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국내 법률도서관 간의 협력, 법학전문도서관 간의 협력, 나아가서는 외국 법률정보기관들과의 협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ABA 기준해석 601-1은 로스쿨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협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안 및 시행령안과 심사기준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IV. 제 언

법률전문가들은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로 법률도서관에 소장된 각종 기록자료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정보의 보고인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기술과 능력이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하겠다. 특히 법률영역의 확대, 임상교육의 필요성 증대, 정보기술의 발전, 학제간 연구의 증가, 세계화현상, 그리고 강의 보다는 학습이 강조되는 현실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 로스쿨에 대해 직접 통제를 하는 법률전문직단체(ABA, AALS)들은 기준, 준칙과 세부규정 등에서 로스쿨 도서관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도서관을 로스쿨의 필수적 시설로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여건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로스쿨 법률도서관에 대해 기준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학전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과 서울대학교에서 위탁과제로 연구

45) Wegner, *ibid.*, p.255.

한 인가심사기준 연구에서 다루어진 도서관 관련 내용을 검토 비판하였다.

우리나라의 법률안 등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관 설치에만 의미를 둘 뿐 법학교육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 인가심사기준 연구 역시 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충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관하여 참여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차제에, 법학전문도서관이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실험실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인가기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1960년대에 법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점 즉 도서관의 이용이 다만 도서관 좌석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sup>46)</sup> 행태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더라도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도서관이 법학교육을 위한 실험실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이 법학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 작용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대학원장, 교수,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특히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껴 도서관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교수들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특히 교과과목의 교육에서도 도서관 자료의 활용이 습관화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법학전문도서관의 내실화를 위해 독립된 영역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 중이고 이의 통과에 대비하여 동법시행령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인가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세부적인 인가심사기준을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그 보고서도 제출받았다. 그런데 인가심사기준 연구에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을 다른 교육시설과 함께 '교육시설 영역'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설들이 시행령안에 의하여 규정된 반면 법학전문도서관 만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여 교육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인가심사기준 연구에서도 '교육시설 영역'중 법학전문도서관 관련 항목에 관한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미국 ABA의 로스쿨 인가기준처럼 다른 교육시설과 분리하여 독립된 영역으로 취급하는 것이 도서관의 내실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46) Jay Murphy, *Legal Education in a Developing Nation: the Korea Experience*, Korea Law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7, p.134.

(3) 법학전문도서관의 운영상 자치제를 채택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려면 법학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지원시설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도서관이 법학교육과 법률연구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려 예산, 인사 기타 운영 면에서 중앙도서관과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활성화 내지 법학전문도서관의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4) 도서관건물 기타 시설

법학전문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법률도서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운영된다면, 도서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구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학의 형편에 따라 독립된 건물을 건립하거나 또는 한 건물을 도서관 용도와 다른 용도로 겸용하여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과 교수의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습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들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열람석이 마련되어야 하고,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인쇄자료 이외에 전자정보원, 시청각자료 등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기술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5) 법률전문사서의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정보학 교육제도는 미국의 교육제도와 달라 법학 및 도서관·정보학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은 법률전문사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도서관이 법학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능력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려면 도서관장 및 도서관 직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차체에 법률전문사서의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학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조기에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도서관 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학과 도서관·정보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법률전문사서를 도서관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도서관의 정착 나아가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직 교수 중에서 법률정보 내지 법률도서관에 관심과 열의를 지닌 원로교수를 도서관장으로 선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직원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와 같이 법학과 도서관·정보학 분야의 석사학위를 지닌 사람을 법률전문사서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완화하여 법학과 도서관·정보학 분야의 학사 혹은 석사학위를 지닌 사람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서를 기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점수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일반 사서 내지 법률도서관의 사서들 사이에 나타나 장기적으로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법률사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질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기 곤란한 현실에서는 법과대학 학생을 조교로 채용하여 교수와 학생의 지원을 하도록 활용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sup>47)</sup>

(6) 장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인가받기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법과대학들은 대부분 그 역사가 오래된 대학들이므로, 오래된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에서 도서관장서의 양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되고 별로 가치가 없는 자료라도 대부분이 폐기를 단행하지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에 소장된 법학 관련 자료의 양이 곧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학교육과 법률연구에 필요한 핵심장서 목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소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핵심장서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나온 법률관련 각종 일차자료들과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수록한 각종 이차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정보를 수록한 매체가 마이크로필름, 전자정보원, 시청각자료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로 골고루 소장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자료의 이용을 위한 장비와 공간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

(7) 도서관봉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최신 도서관 건물을 건립하고 훌륭한 법률장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직원에 의하여 도서관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서관이 법학교육을 위한 중심지가 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기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BA 로스쿨인가기준과 같이 법학전문도서관의 구체적 봉사 내용을 명문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과목인 ‘법률정보의 조사’ 라는 교과목의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47) H. Richman and S. Windsor, "Faculty Services: Librarian-supervised Students as Research Assistants in the Law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91, No.2(Spring 1999), p.279.